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91
----------	-------

발의연월일 : 2025. 10. 24.

발 의 자 : 임호선 · 이상식 · 정준호

장종태 · 안도걸 · 윤준병

김승원 · 박정현 · 조계원

강선우 · 복기왕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에 둘 수 있는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명 이상 25명 이하로 정하고,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5년 8월 현재 지역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한 명당 남성 조합원 수는 1.6명으로 남녀 간의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여성 이사는 남성이사 6명당 1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조합이 여성 조합원의 대표성과 조합의 민주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의 임원진 구성 시 이사가 껴워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민주성과 성평등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8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재임 중인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의 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생 략)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 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을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 에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 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 여야 한다.</u>	⑧ ----- ----- ----- ----- - <u>다만, 재임 중인 이사가 궐 위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의 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10 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⑨ · ⑩ (생 략)	⑨ · ⑩ (현행과 같음)